

무배당 KB라이프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보험 II

## 약관

# 무배당 KB라이프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보험 II 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KB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와 무배당 KB라이프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보험II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 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부담금” 이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 이라 함은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에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 “시행규칙” 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제4조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 제5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이하 “운용관리기관” 이라 합니다)이 전달한 가입자(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한 가입자, 이하 “가입자” 라 합니다) 또는 사용자(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이하 “사용자” 라 합니다)의 운용지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 제6조 (회사의 수행업무)

회사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부담금의 수령
2. 적립금의 운용
3.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電文)을 통한 전자적 거래 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8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가 약관 및 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부담금납입, 보험기간,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제9조 (부담금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0조~제11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10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및 단위보험의 재설정)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각 부담금 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 시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5년 또는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 미만))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제2항의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 미만) 보증기간은 경과기간 11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이에서 계약자가 지정하는 특정일까지로 하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④ 계약자는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⑤ 회사는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처리합니다.

####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동일한 이율보증기간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단,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회사는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 상환합니다.

**제11조 (이율보증형의 적용이율)**

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며,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 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율보증형,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 미만)

• 기준이율(지표금리) (%) = ( A1 + A2 ) / 2

A1 : 국고채(1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2년 이율보증형

• 기준이율(지표금리) (%) = ( A1 + A2 ) / 2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3년 이율보증형

• 기준이율(지표금리) (%) = ( A1 + A2 ) / 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5년 이율보증형

• 기준이율(지표금리) (%) = ( A1 + A2 ) / 2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주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 2년, 3년 또는 5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 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1년, 2년, 3년 또는 5년만기 회사채(A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 3) 평균값은 매월 1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 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④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최저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제13조는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12조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의 단위보험 및 단위보험의 재설정)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 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각 부담금 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 시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3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계약자는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 옵션 전용)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 상환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위보험이 실적배당형 운용방법(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포함된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동일한 이율보증기간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3년 (디폴트 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 옵션 전용)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13조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의 적용이율)

①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며,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 할 수 있습니다.

○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 기준이율(지표금리) (%) = ( A1 + A2 ) / 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주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A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3) 평균값은 매월 1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 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④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최저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 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8. 관계사의 전출입으로 이전하는 경우
9.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반환되는 경우

④ 제3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제15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의 경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1%」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의 경우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1%」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16조 (해지환급금)

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출하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의 경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로 하며,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의 경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 × 80%」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의 해지)제3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2.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해지(상품변경 포함)하는 경우

### 제17조 (해지시 구비서류)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해지청구서(회사양식)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18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 제19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20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부담금 반환청구권 및 해지환급금 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2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2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2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26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이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27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28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회사의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제29조 (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30일(비영업일 포함)이내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비영업일 포함)이 경과한 첫 영업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거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30일(비영업일 포함) 이내에도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